

의안번호	2205479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4.11.20.
추계번호	24C5028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2032년 1억 5,00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총 1억 5,000만원 (연평균3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9~2033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9	2030	2031	2032	2033	합계	연평균
마약류관리기본계획 (안 제2조의3)	-	-	-	150	-	150	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의3 (마약류관리기본계획)	○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(제1항)	의무지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조의3 (마약류관리기본계획)	○	○ 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정책연구용역 사례를 준용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2조의3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의 주기가 단축될 경우,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로 가정
- 개정안과 현행법에 따른 연구용역은 ‘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’이 종료된 2029년에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본 추계에서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추계하기 위해 ‘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(2025~2029년)’ 수립을 위해 실시 중인 정책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함
 - － 국무조정실은 ‘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’의 수립을 위해 정책연구용역비로 1억 5,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연구용역을 수행 중¹⁾
-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총 재정소요에서 현행법에 따른 총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

1) 국무조정실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「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(2025~2029) 및 시행계획(2025) 수립을 위한 마약류 대응 정책 연구」 연구용역을 시행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9년부터 2033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‘2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’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용과 ‘3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’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용은 각각 2029년과 2032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추계결과,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경우 2032년 1억 5,000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총 1억 5,000만원 (연평균3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9~2033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9	2030	2031	2032	2033
마약류관리기본계획 (안 제2조의3)	현행(A)	150	-	-	-	-
	개정(B)	150	-	-	150	-
	추가재정소요(B-A)	-	-	-	150	-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용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장우윤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4741	jangwy93@assembly.go.kr